49 스프레이 도장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무후각증

성별	남성	나이	44세	직종	스프레이 도장업 종사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98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9월까지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11월에 □대학병원에서 무후각증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사업장은 사출성형-도장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은 는 1998년 7월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까지 약 16년 3개월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를 주로 하였다.

1일 작업시간은 08:30~17:30으로 점심시간 60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이지만 때때로 10시간 동안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식시간은 1일 10분간 2회였으며 1주일에 6일간 근무하였다. 도장을 위하여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하고, 배합된 원료를 수동으로 에어건을 활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다. 도장라인은 2009년 8월부터 자동화하여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였으나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다.

자동 도장 업무의 경우는 배합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루 2회에서 많을 경우 30여회까지 배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관창고의 페인트 배합용 저울에서 페인트를 섞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외에 빈도가 많지는 않으나, 업무 중간에 자동기기 생산 라인을 열고 노즐 청소 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배합공정 상부에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및 수동도장 부스에는 국소배 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 당시 배합작업이 없어서인지 전체환기 팬은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페인트와 희석제의 용기는 열린 상태로 보관 되어 있었다. 수동도장 작업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도장작업을 실시하였고, 건조공정에 제품을 로딩하는 작업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5 의학적 소견

○○○의 진료기록 및 요양급여 신청서에 따르면, 3~4년전부터 후각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12월 후각 검사 통하여 무후각증으로 진단되었다. 당시 진료에 따르면, 알레르기성비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있다. 진단 당시 이비인후과에서는 무후각증으로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였다.

현재 타업체에서 유사한 업무 수행 중이며, 본인 진술에 따르면 후각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콧물 코막힘 증상은 경험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염증상이 있었다고생각하지 않으며 현재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는 44세가 되던 2014년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 □사업장에서 약 21년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과 용매 혼합물, 유기용제가 관련 있다는 문헌보고가 있다.약 21년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아세톤, n-헥산 등 유기용제에 복합 노출되었고, 무후각증을 일으킬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후각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끝.